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2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김홍걸·양기대·안민석

김교흥 • 변재일 • 진성준

임오경 · 김민철 · 권인숙

송옥주·김경만·홍성국

임호선 · 이정문 · 조승래

서삼석ㆍ허 영ㆍ최종유

윤호중ㆍ정필모ㆍ민형배

이학영 · 이형석 · 김승워

의원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3만 3천명에 이르렀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정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통일부, 즉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의2(<u>국가</u> 의 책무) ① <u>국가</u> 는 |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 의 책무) ① <u>국가 및 지방자치</u> |
|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 | 단체 |
| 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 |
|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
|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 | |
| 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 |
| 하여야 한다. | |
| ② <u>국가</u> 는 제1항에 따라 보호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 | |
| 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 | |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 | |
| 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 | |
| 야 한다. | |